

교육부 고시 제2015-80호

초·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(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, 2015. 9. 23.) 【별책 1】 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2015년 12월 1일

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

부칙

1.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,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
가. 2017년 3월 1일 : 초등학교 1, 2학년

나. 2018년 3월 1일 : 초등학교 3, 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

다. 2019년 3월 1일 : 초등학교 5,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

라. 2020년 3월 1일 : 중학교 3학년, 고등학교 3학년

단, 중학교 사회 교과(군)의 '역사'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'한국사'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.